

(별지 제1-2호 서식)

타소장치허가기간연장(신청)서						처리기간
※ 표시는 신청자가 기입						1 일
※신청자		기간연장승인번호				
		※타소장치허가일자				
		※타소장치허가번호				
※연장사유		※장치장소: ※장치기간:20 . . .부터 (. . . 일간) 20 . . .까지 ※연장기간:20 . . .부터 (. . . 일간) 20 . . .까지				
※장치물품내역		※화물관리번호:				
품 명 규 격 수 량 가 격 세 액						
담 보 사 항	※담보종류	※담보금액	※담보일자	※담보기간	※담 보 연 장 기 간	확 인
관세법 제67조제1항 및 보세화물관리에 관한고시 제6조제5항에 의거 위와 같이 타소장치 허가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. 20 위 신청인 (인) 세 관 장 귀하			위 신청사항을 관세법 제67조제1항 및 보세화물관리에 관한고시 제6조제5항에 의하여 (다음 조건부로)타소장치허가기간 연장을 승인함 허가조건:타소장치된 물허가기간 연장된 물품에 대한 제세 및 제반비용 기타 일체의 책임을 신청인이 부담할 것 20 세 관 장 (인)			
수수료		없 음				